

■ 최신 해외정보 - 중국 ■

민법총칙 10월부터 시행

민법총칙이 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본원칙, 민사권리, 민사법률행위, 민사책임 및 소송시효 등 기본적인 민사법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행 중인 민법통칙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통칙과 병행하여 적용됩니다. 다만, 두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,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이 적용됩니다. 민법총칙의 통과는 민법전 편찬 작업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로 민법전의 각론 편찬 작업이 2020년 통과를 목표로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.

최고인민법원, 「혼인법 사법해석(2)에 관한 보충규정」 공표

지난 2월 28일, 최고인민법원은 「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사법해석(2)에 관한 보충규정」을 공표하였습니다. 새 규정은 배우자가 도박, 마약 등 위법, 범죄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,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.

최고인민법원, 「집행에 관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서」 공표

지난 3월 1일,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에 관한 3개의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서를 공표하였습니다. 동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「민사집행 절차 중 재산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」에 따르면, 공간기관 등 부서와의 협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. 「최고인민법원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 정보 관련 규정」은 신용불량 명단의 기간 규정을 추가하고, 피집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. 또한 「집행대금및물품에대한관리업무규정」은 하나

의 사건 금액을 하나의 계좌로 집계하는 관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집행 대금 및 물품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.

교통운수부, 「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세칙」 개정안 공표

최근 교통운수부는 「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세칙」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, 기업이 국제선박 운수업무 및 국제선박 관리업무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신청하도록 하였던 바, 기존의 두 업무에 대한 경영 허가를 기업 설립 전에 하도록 한 사전 허가를 사후 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.